

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59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10. 23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□ 개정이유

-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 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모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 (안 제6조제2항)
 - 전염병예방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임시예방접종에 대해 실비수준의 접종약품 대금 징수 근거 신설
-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
 -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)
 - 시험결과의 광고금지등 (안 제10조)
 - 성적원본의 말소 (안 제11조)
 -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(안 제13조)
- 삭제된 조항에 따른 조항의 조정
 - 제12조를 제10조로 하고
 - 제14조 내지 제18조를 제15조로 한다.

□ 개정근거

-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전문개정
- 전염병예방법 제12조
- 조례.규칙.규정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 계획

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전염병예방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임시예방접종(일본뇌염, 간염, 유행성출혈열, 장티푸스, 유행성독감)자에 한하여 실비수준의 접종약품 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제8조제3항·제4항, 제10조·제11조·제13조를 삭제하고, 제12조를 제10조로 하며, 제14조 내지 제18조를 제11조 내지 제15조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타수가)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,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신 설></p> <p style="margin-top: 40px;">제8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①~②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③검사,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요하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는 거창군 여비 조례에 의하여 시험 의뢰자가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④검사, 시험 등을 위하여 이에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제10조(시험결과의광고금지등)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는 시험의뢰목적 이외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다.</p>	<p>제6조(기타수가)①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전염병예방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임시예방접종(일본뇌염, 간염, 유행성출혈열, 장티푸스, 유행성독감)자에 한하여 실비수준의 접종약품 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40px;">제8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③ <삭제>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④ <삭제>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삭제>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1조(성적원본의 말소)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.</p> <p>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12조(생략)</p> <p>제13조(입원서약서 및 보증금)①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(별지1호서식)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~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.</p>	<p>제10조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<p>제14조 내지 제18조(생략)</p>	<p>제11조 내지 제15조(현행과 같음)</p>